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72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3
IV. 검토의견	4
1.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4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4
나. 검토의견	4
2. 기본계획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등 포함 ..	7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8
나. 검토의견	8
3. 청년농어업인 고용 지원 및 우대에 관한 규정 통합	12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3
나. 검토의견	13
4. 후계농어업인 대상 조세감면 및 자금 지원 근거 신설 포함	16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7
나. 검토의견	18
1) 조세감면	18
2) 자금 및 컨설팅 지원	20
 [참고자료]	 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년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

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

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제13조(청년농어업 우대)을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와 병합하여 한 조문으로 함(안 제10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Ⅲ.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230호)」이 발의되어(2022. 4. 13.)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2023. 7. 14.) 동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다른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보류된 후 임기만료 폐기됨.

IV. 검토의견

1.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u>육성</u> 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u>육성하고,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u> -----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후계·청년농 육성을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단계별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경력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됨.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2년 10월 수립)”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은 초기소득의 불안, 농지 확보의 어려움, 까다로운 정책자금 요건, 교육콘텐츠 부족 등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 ❖ (시기/대상) `22.3.27.~5.6. /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2,040명
- ❖ (설문조사 수행기관) 한국 궤협
- ❖ (주요 설문사항) 영농경력, 영농창업기반(농지·자금·교육), 소득 관련 애로사항 등

□ 설문조사 결과(요약)

- ① (영농시작 단계 가장 큰 어려움) 영농기술 습득(31.7%), 경영자금 확보(30.4%), 농지확보(13.4%), 기초생활비 확보(11.2%)
- ②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어려움) 시설·농지 자금 부족(32.5%), 적은 소득(16.8%), 농지 추가 확보 어려움(12.7%), 영농기술 부족(11.4%)
- ③ (농업소득으로 생계 가능여부) 대다수(77.8%)가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보완(70.3%)
 - * 농가별 월 평균 생활비 : (초기) 266만원, (현재) 306만원
- ④ (농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 높은 농지가격(58.9%), 마음에 드는 농지 부족(25.0%), 농지에 대한 정보 부족(14.8%)
 - * 평균 경작 규모 : (논) 9,624㎡, (밭) 5,456㎡, (과수원) 7,020㎡
- ⑤ (정책자금 활용) 낮은 담보와 신용도(24.3%), 보조사업의 높은 문턱(30.0%) 등으로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
 - * 후계농 지원사업 융자금액은 평균 1.52억원 추가로 필요한 영농자금 규모는 약 2.36억원
 - ** 정책자금 활용처는 농지 구입·임차(58%), 시설 설치·임차(46%), 농기계 구입·임차(16%),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4%) 순 (복수응답)
- ⑥ (정책자금 개선 필요사항) 지원자격 요건 완화(49.4%), 신청절차 간소화(41.6%), 지원금액 상향 조정(29.9%), 상환 기간 연장(25.6%)
- ⑦ (영농교육 개선 필요사항) 다양한 콘텐츠 개발(24.5%), 현장실습 연계(18.5%), 수준별 강좌 개설(12.5%), 교육 시간대 다양화(11.2%), 강사 전문성 증대(10.4%)
 - * (주요 이수분야) 재배·사양 84.4%, 농기계 39%, 스마트농업 35.8% 등

※ 자료: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p. 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로서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속가능성이란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¹⁾ “지속가능한 성장”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경제나 산업 단위로 사용됨.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소득 증진뿐 아니라 생태적·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해석을 내포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입법례]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 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체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포함될 경우 시책 수립 시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 시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기본계획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등 포함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 방안”,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1. (현행과 같음)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u>강화</u> 를 위한 교육 방안	2. ----- <u>강화</u> <u>및 첨단장비 조작 등을</u> ----- -----

현행	개정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 ·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 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u><신설></u>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3.·4. (현행과 같음) <u>5.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홍보를 통해 정책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에는 공감하나, 첨단 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의 경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포함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 사항으로는 ①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②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③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⑤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

2) <참고자료1>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추진전략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³⁾이 있음.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의 “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 방안”과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을 추가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으로의 후계농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최근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농업⁴⁾이 확산되며 2024~2034년 전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9.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⁵⁾

[스마트농업 관련 첨단기술 사례]



3) 시행령에서는 ① 기본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5) 박미선, “스마트 농업과 농업 부문 고용 현황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 스마트농산업 분야 주요 기술·품목 >			
			
근권부 관리 솔루션	농작업용 드론(방제 등)	자동 착유 시스템	과실수확 로봇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1.),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신규진입을 돕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재배 및 ICT 기술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인력 부족으로 농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기술의 도입과 운용이 어려운 상황임.⁶⁾ 2023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과정에서 “스마트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또한, 농어촌에 대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사업,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귀농어·귀촌 홍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⁷⁾

6) 농림축산식품부(2025.1.),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

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 방안”과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첨단기술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첨단장비 교육”이 현행법상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 교육”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경영역량”은 경영전략/기획, 판로개척/유통관리, 정보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므로, 개정안처럼 스마트농업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같은 취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 센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첨단장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⁸⁾

8) <참고자료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중 개정안 제6조제2항 관련 내용

[2025년 첨단장비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스마트팜청년 창업보육센터	8,000	○(사업목적)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 대상 실습 위주 장기교육을 제공 ○(지원대상) 스마트팜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 (18~39세)	첨단장비 조작교육
첨단기술공동 실습장	1,103	○(사업목적)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공동실습장(대학, 농가 등)에서 현장 농업인이 교수가 되어 수준별 ICT 현장실습교육 실시 ○(지원대상) 예비농업인 및 농업인 등	첨단장비 조작교육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정보화)	1,640	○(사업목적)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예 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지원대상) 귀농귀촌 희망자(청년농 포함) 등 * 귀농귀촌통합플랫폼 예산을 활용하여 ‘청년농 통 합플랫폼 탄탄대로’ 홈페이지 구축('25.5.22.) * 청년농과 영농희망 청년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정 보 통합 제공 및 온라인 소통공간 지원	홍보 (정보 제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2025.4.15.)

3. 청년농어업인 고용 지원 및 우대에 관한 규정 통합

개정안은 현행법 제10조의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조항과
현행법 제13조의 청년농어업인 우대조항을 제10조로 통합하여 규정하
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 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 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 지원 및 우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와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는 목적, 범위, 효과 등이 다른 조항으로 단순히 조문을 병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후계농어업인⁹⁾은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영농 또는 영어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농어업인¹⁰⁾은 농어업 분야 종사자나 창업·취업의 의사가 있는 사람 중 40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 10)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후계농과 청년농 정의]

요건	연령요건	영농경력	취업자 포함여부	규모('20)
후계농	만 50세 미만	10년 미만	미포함	33,470명
청년농	만 40세 미만	-	포함	창업: 12,426명 취업: 10,192명

※ 자료: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현행법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¹¹⁾

제1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

11)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2025년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제13조) 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내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962,500	(사업목적) 고령·은퇴·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장기임대 (지원대상) 농업인 등 (우선지원) ①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 → ②2030세대 → ③후계농
농지매매	95,300	(사업목적) 비농업인 및 은퇴농 등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지원대상) 농업인 등 (우선지원) ①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 → ②2030세대 → ③후계농
임차임대	17,820	(사업목적) 고령·은퇴농 등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장기 임차하여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대상) 농업인 등 (우선지원) ①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 → ②2030세대 → ③후계농
선임대후매도	19,250	(사업목적)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희망 농지를 매 입, 최장 30년 임대 후 매도 (지원대상) 18~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30,800	(사업목적)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 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등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87,143	(사업목적)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예정자 대상 기반구축 및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18세~50세 미만 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2025.4.15.)

개정안은 두 조항을 현행법 제10조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두 조항 모두 청년농어업인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동일한만큼 같은 대상에 대한 지원 내용을 지원 분야별로 한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현행 제10조와 제13조 비교]

구분	제10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3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 대상	청년농을 고용하는 농업경영체	청년농
분야	고용	고용(취업) 외 농지, 주거, 자금, 교육 등 쉰 분야 우대
효과	청년농의 취농 지원	창농, 취농 모두 포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2025.4.15.)

다만, 후계농어업인 지원 시 청년농어업인의 우대(현행법 제13조, 개정안 제10조제2항)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청년농어업인 고용 비용 지원(현행법 제10조, 개정안 제10조제1항)보다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제1항으로, 개정안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각각 조문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후계농어업인 대상 조세감면 및 자금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제13조(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

현행	개정안
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대상 세제 지원은 조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세제 감면 조항을 두는 것은 개정 실익이 없음.

또한,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은 후계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문(專業)적 농어업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2) 기획재정부

개별법상 세제지원 규정은 실익이 없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도 배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행정안전부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일반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나. 검토의견

1) 조세 감면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동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10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097호)」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안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조세 감면 관련 개정안]

개 정 안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의5). 나.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개 정 안	주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의 주체인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의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자경농민 중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6조). 다. 자영어민 중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9조). 라.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10조).

농어업 분야 종사를 결정함에 있어 세제지원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현재도 영농상속공제¹³⁾,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¹⁴⁾ 등 후계농어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 관련 법률 등으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¹⁵⁾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없이는 조세지원이 불가능하고, 개정안과 같은 개별법상 조세지원 근거 규정 없이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자금 및 컨설팅 지원

개정안 제2항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컨설팅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경영진단 등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025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내용
농업마이스터대학 (청년농ceo양성과정)	5,125	(사업목적)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 영농기술 및 멘토링 교육 실시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예비 청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420	(사업목적) 농업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및 경영진단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적정 투자 유도 (지원대상)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2040세대 역량향상프로그램	1,263	(사업목적) 품목별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 및 선도농양성·활용 교육을 통해 성장단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지원 (지원대상) 농업인(청년농업인 포함)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2025.4.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경영체¹⁶⁾에 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유사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다만,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의 경우, 현행법 제8조17)에 창업기반 조성 자금 지원 등을 위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제도는 대상자의 경영능력과 의지를 고려해 자금을 배분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17) 법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또는 어선의 건조(建造)·구입 및 보수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2.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시설물 및 농기계·어구(漁具) 등의 장비 구입·임차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 나. 묘목, 종자 및 친어(親魚)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농어업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창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 한 후, 농지 및 농기계·어구 등의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¹⁸⁾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은 각각 약 1,000명, 5,000명 규모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구 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목적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구축 및 운영자금 지원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자금 지원 및 농지·자금·교육 지원 등을 연계하여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농업 고령화 완화
지원내용	○경종·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이차보전) *(지원조건) 연리 1.5%, 최대 5억원 대출, 5년 거치 20년 상환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95%),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사업대상	○청년농(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18세 이상~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창업농 *사업선정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함
2025년 예산	융자 10,500억원/이차보전 871억원 (인원: 1,000명)	179억원 (인원: 5,000명)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자료(2025.4.20.) 재구성

18) <참고자료3>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및 관리방안

따라서 자금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제도와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참 고 자 료

참고1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추진전략

목표 : 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 3만명 육성

전략 ①

"더 많은" 후계·청년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
-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전략 ②

보다 "쉽게" 농지·자금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 농지은행 매매·임대 지원 강화
청년농 대상 농지공급물량 대폭 확대,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선임대 후매도 도입
- 융자조건(상환기간, 금리) 개선 ■ 정부(금융공공기관) 직접투자 펀드 조성

전략 ③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성장 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지원
- R&D(기술, 판로,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 연계 지원

전략 ④

"왜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으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 임대주택 확대, 농촌 보육서비스 확충
청년농촌보금자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농촌공간 정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추진체계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
- 농업 창업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 **청년농 3만명+α 육성(~'27),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

⇒ 장기적인 유입 추세(5년 평균 26천명) 유지로 **고령화율 완화, 청년농 비율 증가**

① 고령화율('40p) : (계획 이전) 76.1% → (계획 이후) 62.9 (13.2%p ↓)

② 청년농 비율('40p) : (계획 이전) 1.2% → (계획 이후) 10.0 (8.8%p ↑)

※ 자료: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참고2

제1차 기본계획 중 개정안 제6조 관련 내용

p.22	○ (스마트팜 보육센터) 선도농가 실습 교육 도입, 임대형 스마트팜 우선 입주 연계 지원으로 실전형 예비 창업교육 강화 -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 이후 선도농가 매칭으로 현장경험 확대 및 기술·경영 역량 이전 기회 제공('23~)^[자료] * '23년 20명 규모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여 수료생 및 청년농 우선 입주 지원 * '27년까지 15개소(혁신밸리 4, 지역특화 임대팜 11) 조성으로 연간 126명 청년창업 지원
p.24	○ (전문성) 첨단기술 기반의 품목 전문가 양성체계 운영('23~)^[자료] - 첨단 재배 기술과 ICT 역량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의 성장을 위해 품목별 전문교육* 확대 * 첨단기술품목특화전문교육, 2040세대 스텝업 기술교육 등 - 주요 품목*별 재배기술과 ICT 활용 능력을 보유한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하여 신규 청년농 대상으로 품목별 강의 제공 * ('23) 5개 품목(토마토, 딸기, 멜론, 한우, 양돈) 20명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청년실습 전문교수(가칭)' 운영 근거 마련
p.31	○ (서비스공동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 내 다양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공동체 육성 및 확산 * 전기, 상하수도 등 집수리, 어르신 병원 이동 차량 운행, 말동무, 방법순찰 등 * 농촌 서비스공동체 운영 규모 : ('22) 22개소 → ('23) 30 - 농촌 서비스 분야에서 주민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조정·홍보하는 청년 활동인력 지원 * 해당 읍·면에 체류하는 만 50세 이하 활동가에게 체류비, 활동비 지원(1인당 월 200만원 수준)
p.33	○ (플랫폼) 농지·자금·교육 등 농업 창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품목 단위 정보교류 지원('22.12~)^[자료] * ('22) (1단계) 농지·자금·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중심 시범 운영 → ('23) (2단계) 빅데이터 분석 기반 도입 완료 후 본격 운영 < 농업 창업 플랫폼 주요 기능 > ①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 특정 지역의 농지(농지은행), 일자리(워크넷), 복지(복지로), 교육(방과후학교포털·농업교육포털), 주거(농어촌알리미·실거래가공개시스템·토지e음) 등 정보 제공,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신청까지 연결(해당 누리집 바로가기 포함) ② 회원 정보 분석 및 추천 : 회원 기본 정보(연령, 관심지역, 가족, 자산 및 직업 등) 및 활동 정보(교육 이수, 체험 참여, 검색 정보 등)를 종합 분석하여 회원의 영농 단계 및 관심 영역 분석, 현재 상태에 적합한 정보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추천 ③ 연결·공유·개방에 기초한 상호 교류 : 회원 상호간, 회원과 회원이 관심 갖는 지자체 간, 회원과 민간 서비스 업체 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제공 ○ (현장지원) 지자체별(시·군 단위) 농업 기술센터 내 청년농 창업지원 전담 인력인 '청년농 코디네이터' 운영 확대 * 청년농 코디네이터 운영 규모 : ('22) 12명 → ('23) 40 → ('27) 165 -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아이템 발굴, 농지·자금 정보 제공 등 역할 수행

※ 자료: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참고3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및 관리방안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필수 과정	•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선택 과정	•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 30%미만 이행	•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 30~80% 이행	•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80%이상 이행	• 주의조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 기간차감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 미가입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경영장부 기록		•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영농계획 이행		•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최대 3개월, 지급 기간차감)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상근 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성실신고	선발시 신청서류	•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이행 점검	•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미제출시 지원금 일시정지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적발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기간차감 조치 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신청 • 사업목적(Ⅰ-1) 및 사용용도(Ⅲ-1-3)에 따른 사용	• 지원금 미신청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적발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의무영농 기간준수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독립경영) 의무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